

서스틴베스트 내부통제기준

제정: 2022-11-07

개정: 2023-09-01

제 1 조(제정 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 내지 제 30 조 및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에 따라 서스틴베스트(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4.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는 ESG 평가기관으로서 ESG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5 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생략)

제 10 조(내부통제위원회)

- ① 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⑤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생략)

제 22 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이해상충의 확인·제거 및 관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위험관리책임자(또는 위험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원을 포함)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와 임직원은 ESG 평가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계, 절차 등을 회피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을 적절히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⑤ 회사는 컨설팅, 자문 등 서비스로 인해 ESG 평가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인력으로부터 ESG 평가업무 및 ESG 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⑥ 회사는 이해상충 관련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위험관리책임자들에게 심사하도록 한 후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⑦ 회사는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ESG 평가 업무에 있어 해당 계열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업무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하여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⑧ 회사는 5%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ESG 평가에 있어 잠재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생략)

제 25 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위험관리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생략)

제 42 조(금지사항)

①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와 임직원은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기업 등에게 일반적인 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생략)

제 47 조(준법감시인)

① 회사는 ESG 평가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를 이 장에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준법감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한다.

제 48 조(운영지침)

회사는 ESG 평가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및 일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제 49 조(데이터 수집 및 관리)

- ① 회사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 ② 추정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추정의 기본 방법론을 공개하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원천데이터의 범위, 수집 방법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 및 임직원은 ESG 평가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비공개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 ⑤ 임직원은 평가대상기업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 등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회사는 ESG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공개정보의 사용,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에 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제 50 조(투명성)

- ① 회사는 ESG 관련 정보비대칭을 축소하고 정보이용자 등이 평가등급 혹은 평가 데이터의 유용성 등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ESG 평가방법론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다.
- ② 위 제 1 항에서 평가방법론에는 원천데이터의 수집, 평가지표, 가중치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③ 평가방법론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변경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기업별 평가등급과 평가등급별 정의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⑤ 회사는 투명성을 위해 평가방법론과 평가등급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51 조(이해상충 관리)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계, 절차 등은 최대한 회피하고 관련 사실을 적절히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ESG 평가 관련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수립 및 운영한다.
- ③ 회사는 컨설팅, 자문 등 서비스로 인해 ESG 평가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인력으로부터 ESG 평가업무 및 ESG 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 ④ 회사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경우 위험관리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도록 한 후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ESG 평가에 있어 잠재적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제 52 조(기업과의 피드백 절차)

회사는 하반기 평가등급을 확정하기 전에 평가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범위, 내용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통보하여 평가와 관련한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업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 53 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 ① 회사와 임직원은 ESG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평가대상기업에 회사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행위
 - 3. 기타 ESG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
- ② 회사와 임직원은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업 등에 일반적인 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